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김승민·유정수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한국선급 검사원

**요 약** : 선박 승하선수단과 관련하여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의 내용 중 일부 규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규정 해석이 제한적이며 선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선박 설계 변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규정 해석에 대해서도 기구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침 개정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선박 승하선수단 적용 지침, MSC.1/Circ.1331,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 개발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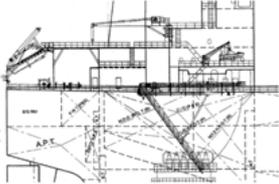
- 선박의 승하선 수단은 SOLAS II-1/Reg.3-9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의하여 MSC.1/Circ.1331의 적용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해석 범위가 제한적이며 선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임.
- 특수 선종에 대한 고려 등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부가적인 해석이 마련되어야 함.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현측사다리 및 경웨이의 제조, 설치, 보수유지 및 점검/검사에 대한 지침 (MSC.1/Circ.1331) 관련 요건의 분석
  - > 현측사다리 설치위치 관련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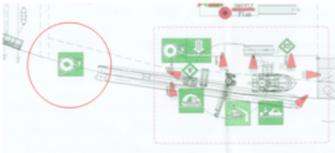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현측사다리 및 경웨이의 제조, 설치, 보수유지 및 점검/검사에 대한 지침 (MSC.1/Circ.1331) 관련 요건의 분석
- 현측사다리 위치 관련
  - > 화물 작업 구역 범위 외의 "화물 또는 매달린 물건"의 범위 제한 여부
  - > 선용품 하역설비(Provision Crane), 구명설비 진수장치 등의 포함 여부
  - > 화물지역 외부에 위치한 선용품 하역설비(Provision Crane), 구명설비 진수장치 등에 대하여 사용제한등의 경고판을 설치하여 가능하도록 함.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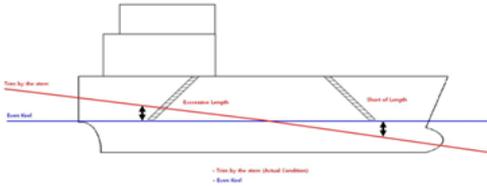
- 현측사다리 및 경웨이의 제조, 설치, 보수유지 및 점검/검사에 대한 지침 (MSC.1/Circ.1331) 관련 요건의 분석
  - >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구명줄 불이) 추가 비치 여부
  - > 사용시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SOLAS 3장의 필요수량에 추가 요구하지 않음.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현측사다리 및 경웨이의 제조, 설치, 보수유지 및 점검/검사에 대한 지침 (MSC.1/Circ.1331) 관련 요건의 분석
  - ▶ 현측사다리 길이 결정 관련 실제 운항 상태의 트림 고려 여부
  - ▶ 복원성자료상의 실제 트림상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의제문서 주요내용



- 선박승하선 수단 요건 및 MSC.1/Circ.1331 지침 해석 필요성 재기
  - ▶ MSC.1/Circ.1331의 내용 중 그 의미가 모호하며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선박 설계 변경 등의 문제를 초래함.
  - ▶ 규정 해석에 대하여 각 기국 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 이의 개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의제문서 주요내용

standards such as ISO 9489, ISO 1561, ISO 1562 and ISO 1563.

3. The Republic of Korea,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ship building countries, has several facilities for inspection and testing, and various ship repair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urvey of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MEDI)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ritime Safety Act (MSA). The way of promulgating and validation of the requirement through ship repair organizations is not sufficient and clear interpretation is guidance in this matter.

Proposed

4. Considering the above,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pose to amend the Guidelines for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disembarkation of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MSC.1/Circ.1331), based on the experience gained from various ship building projects and port state control (PSC) visits.

Action requested of the Sub-Committee

1. The Sub-Committee is invited to consider the proposal in the annex and take action as appropriate.

### □ 부속서와 같이 MSC.1/Circ.1331 지침 개정안 제안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의제문서 주요내용

ANNEX

DRAFT AMEND TO THE GUIDELINES FOR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URVEY OF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MSC.1/Circ.1331)

Section 1 INTRODUCTION

Problem existing from section 2 as follows:

2.1 Location  
As far as possible, the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should be placed over the working area and clear of the vessel's deck or other unobstructed deck area when in use.

The provis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are placed over the working area of the vessel's deck or other unobstructed deck area when in use.

2.2 Lighting  
A lighting plan is to be placed in the vicinity of the gangway to indicate the danger when the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are in use.

2.3 Arrangement  
2.3.1 Each accommodation ladder should be of such a length to ensure that, at a maximum design loading angle of inclination, the lowest platform will be not more than 800 mm above the surface in the actual line of the lighted ramping location (measured on the sea and safety levels).

- MSC.1/Circ.1331 지침 개정안
  - ▶ 현측사다리 설치 위치; 선용품용 하역설비 및 구명설비용 진수설비등에 경고판 부착 사용 가능하도록 함.
  - ▶ 구명부환 추가 비치 사항 아님을 규정함.
  - ▶ 현측사다리 길이와 관련하여 복원성자료상의 실제 트림상태를 고려 가능하도록 함.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 주요 성과

- 내용
  - ▶ MSC.1/Circ.1331 지침 규정 중 적용시 모호한 규정 식별 완료
  - ▶ 실적선 적용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완료
  - ▶ 아국 조선소 적용 사례를 반영한 MSC.1/Circ.1331 지침 개정안 작성 완료
- 의제문서 제출
  - ▶ 제출 회의명 : IMO DE 57
  - ▶ 회의기간 : 2013. 3.18-22
  - ▶ 의제제출 : 2013. 1. 7
  - ▶ 문서 제목 : MSC.1/Circ.1331 개정 제안

## 선박의 승하선 수단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IMO DE 57 결과 및 후속조치

- IMO DE 57(13,3)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 DE 56/23/2: Proposed amendments to the Guidelines for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inspection/survey of means of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제출**
  - ▶ 회의 시간 부족으로 동의제는 다음 회의인 DE 58(14)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